행정지원본부 제2021-5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 12. 24.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1 교섭요구 노동조합

○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대표자 김동명)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

2 교섭요구일 : 2021.10.06

※ 2021.10. 6.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요구에 대한 내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의하여 접수되었으나, 단체교섭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툼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11.1.)와 중앙노동위원회(2021.12.15.)의 심문회의를 거침에 따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섭참여를 공고함.

3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 안내

○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1.12.31.18:00까지**)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54(우편번호 04311) 대한노인회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자(Fax: 02-718-0737)

○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4 주의 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70-4861-6421)